

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

제정 2013. 9.30
개정 2014.11. 3
개폐정리 2015. 6.30
개폐정리 2015.12.24
개정 2017. 3.31
개폐정리 2018. 1.26
개정 2018. 2.23
개정 2018. 4. 9
개폐정리 2019. 1.22
개정 2019. 4.11

제1장 리스크관리위원회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“리스크관리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공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리스크에 관한 효율적 관리 및 정책수립 등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.<개폐정리 2015. 6.30>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사장, 경영전략본부장, 금융사업본부장, 주택도시기금본부장, 자산관리본부장 <개정 2014.11. 3, 2017.3.31., 2018. 4. 9><개폐정리 2015.12.24>
2. <삭제 2014.11. 3>
3. 사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 6인 이내<개정 2014.11. 3, 2017.3.31., 2018. 2.23>
 - 가. 리스크관리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<신설 2018. 2.23>

나. 국내외 금융기관, 공공기관, 연구기관 및 기업체의 리스크관리 관련 분야 전문가<신설 2018. 2.23>

② 위원장은 사장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영전략본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14.11. 3><개폐정리 2015.12.24>

③ 제1항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14.11. 3>

제4조(의결사항)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리스크관리 전략의 수립 및 조정
2. 총위험자본한도의 설정 및 조정<개정 2017.3.31.>
3. 해당 보증규정에서 정한 상품의 운용한도 설정 및 변경
4. 리스크 측정기준의 승인
5. 위기관리계획의 수립
6. 위기상황분석(Stress Test) 기준의 승인
7. 리스크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의 승인
8.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및 리스크관리규정의 개정
9. 자금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<신설 2019. 4.11>
10. 기타 이사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개정 2014.11. 3>
<기존 9호에서 이기 2019. 4.11>

제5조(보고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받는다.

1. 리스크 측정결과 및 관리현황
2. 위기상황분석(Stress Test) 현황
3. 기타 이사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개정 2014.11. 3>

제6조(소집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<개정 2014.11. 3>

-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회의 개최 1주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발송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 구성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의결방법) ①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보고 및 토의가 필요하지 않거나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 등은 서면결의할 수 있다.

② 의결사항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리스크관리협의회) 리스크관리업무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및 조정역할을 통해 위원회를 보좌하는 기구로서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9조(안전부의)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리스크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부의한다.

제10조(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) ① 상근감사위원은 제4조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관련 직원을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의사록)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의사록에 가부 및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.

제12조(의결사항의 처리) 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지시사항은 리스크관

리 주관부서 및 관련 소관부서에서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3조(수당의 지급) 공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사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4.11. 3><개폐정리 2015. 6.30>

제14조(간사)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.
② 위원회의 간사는 리스크관리 주관부서장으로 한다.

제2장 리스크관리협의회

제15조(리스크관리협의회의 구성) ① 리스크관리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경영전략본부장 및 리스크관리 주관부서장, 기획조정실장, 혁신성과처장, 경영관리처장, 금융기획실장, 심사평가처장, 채권관리실장, 보증이행처장, 기금관리실장, 감사실장 및 외부위원 2인 이내로 구성한다. 다만, 필요시에는 경영전략본부장이 지정하는 부서장 또는 팀장을 추가할 수 있다.<개정 2014.11. 3, 2018. 4. 9><개폐정리 2015.12.24., 2018. 1.26, 2019. 1.22>

② <삭제 2018. 4. 9>

③ 협의회 의장은 경영전략본부장으로 한다. 다만,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개폐정리 2015.12.24>

④ 협의회의 간사는 리스크관리 주관팀장으로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사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.<신설 2018. 4. 9>

가. 리스크관리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

나. 국내외 금융기관, 공공기관, 연구기관 및 기업체의 리스크관리 관련 분야 전문가

제16조(심의·의결사항)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위원회 의결사항의 사전심의
2. 주요 리스크에 대한 관리방안 및 업무조정
3. 개별리스크 소관부서의 중요 리스크에 대한 심의
4. 신상품 개발 및 신규사업 진출 추진시 자본적정성 리스크 평가
5. 리스크관리지표의 선정 및 변경
6. 기타 위원회 위임사항이나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7조(소집 및 의결방법) ① 협의회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.

- ② 협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결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18조(협의회의 운영) ①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리스크관리 주관부서 소관으로 하며, 리스크관리 주관부서장은 회의자료 준비, 의사록 작성 등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.

- ② 제16조에 의하여 안전을 부의하는 경우에는 개별리스크 소관부서장이 사전에 리스크관리 주관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안전을 작성하여 리스크관리 주관부서장에게 협의회 부의를 의뢰한다.
- ③ 제2항의 경우에 개별리스크 소관부서장은 리스크 심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을 작성하여 실질적인 리스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의된 안전에 대하여는 개별리스크 소관부서장이 제안 설명 및 관련사항의 보고를 한다.
- ⑤ 협의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9조(의결사항 처리) ① 리스크관리 주관부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.

② 리스크관리 주관부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·의결된 결과를 개별리스크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한다. 다만,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끝난 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.

③ 개별리스크 소관부서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처리결과를 리스크관리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고, 리스크관리 주관부서장은 이를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한다.

제20조 (수당의 지급) 공사는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사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8. 4. 9]

제21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리스크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사규관리규정 [별표] 사규분류표에 다음의 사항을 신설한다.

편별	분류	사규번호	사 규 명	소관부서
제2편	위원회	0-0	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	경영관리실

부 칙<2014.11. 3>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5. 6.30>

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5.12.24>

이 규정은 2015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7.3.31>

이 규정은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8. 1.26>

이 규정은 201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8. 2.23>

이 규정은 2018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8. 4. 9>

이 규정은 2018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 1.22>

이 규정은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 4.11>

이 규정은 201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